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로 적용되는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함(안 제10조제2항제6호의4).
-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,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를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함(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라목 신설 등).
- 특별진급의 대상을 복무 중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으로 확대함(안 제30조).
-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남성 단기복무 장교·부사관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함(안 제48조제3항 등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장교 등의 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하고(안 제10조제2항제6의3 라목),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¹⁾는 10년간 임용이 제한되는 결격사유 및 제적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임(안 제10조제2항제6의4, 안제40조제1항제4호 나목).

현 행 법	개 정 안
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~ 6의2. (생 략)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	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규정된 죄</u>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

1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7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
제58조의2(벌칙)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·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는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
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
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
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
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
함한다)

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
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
죄

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
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
·청소년대상 성범죄

7.·8. (생략)

③ (생략)

제40조(제적) ①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
제적된다.

1. ~ 3. (생략)

4.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
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. 다만, 제10
조제2항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
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
받은 경우만 해당한다.

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
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
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
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또는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
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
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지
아니한 사람

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
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
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
행이 면제된 날

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
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
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
확정된 날

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
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
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
은 날

7.·8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40조(제적) ① -----
-----,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
-----,

-----.

벌인 징역형의 선고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중한 임용결격 사유인 「군인사법」 제10조제2항제4호³⁾를 적용하면 충분함. 즉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 라목이 적용되어 군인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을 상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.

- 한편, 동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다른 개정안이 현재 국회 소관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, 이 개정안들은 공통적으로 마약 관련 범죄에 대한 벌금형 선고를 임용결격 사유에 포함하면서도, 구체적인 조문을 열거하지 않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 전체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.

이렇게 규정할 경우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한 범죄 중 처벌의 종류로 벌금형을 규정한 범죄만 그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<임용 결격사유에 마약 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유사 개정안>

연번	의안번호	개정안	발의일	논의 경과
1	2207145	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	24.12.31	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
2	2207172	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	24.12.31.	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
3	2207174	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	24.12.31.	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

* 논의 경과는 2025년 2월 기준

-
- 2)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6조(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) ① 제58조 및 제59조에서 정한 죄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(併科)할 수 있다.
 - 3) 「군인사법」 제10조(결격사유 등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
 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국가공무원법 개정안(의안번호 제2207172호) 조문대비표>

현행	개정안
제33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~ 6의2. (생략)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33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<u>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</u>

- 따라서, 법문의 의미를 불명확하게 만드는 조문 인용상 오류를 정정하는 동시에 유사한 취지의 개정안 조문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하여, 안 제10조제2항제6의3호 라목을 “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된 죄”로 하는 수정의견을 국방부와 협의하여 제시함.

개정안	수정의견
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	제10조(결격사유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.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 6의3. ----- ----- -----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
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58조, 제58조의2, 제59조부터 제64조까지 및 제65조의2에 규 정된 죄	라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에 규정된 죄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 기타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
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김 성 완)

제58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
1. 제3조제2호·제3호, 제4조제1항,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·제조·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 2.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·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 3.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·수출입·매매·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 4.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 5.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·소유한 자
 6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 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 7. 제4조제1항 또는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마약류를 매매·수수·조제·투약·제공한 자
 8.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자
-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를 한 자는 사형·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.
-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④ 제1항(제7호는 제외한다) 및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(豫備)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제58조의2(벌칙) ① 제3조제10호 또는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대마를 수수·제공하거나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-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제59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1.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수출입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·종자·종묘를 소지·소유한 자
2. 제3조제2호를 위반하여 마약의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·종자·종묘를 관리·수수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를 한 자
3. 제3조제3호를 위반하여 헤로인이나 그 염류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·소유·관리·수수·운반·사용 또는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를 한 자
4. 제3조제4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물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 또는 사용한 자
5. 제3조제5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

약품을 소지·소유·사용·관리한 자

6. 제3조제6호를 위반하여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거나 수수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
7.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·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·소유한 자

8. 삭제 <2023. 3. 28.>

9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소지·소유·관리 또는 수수하거나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외마약을 제조한 자

10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·소유한 자

11.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의 수출·매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자

12.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(대마는 제외한다)를 취급한 자

13.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3호를 위반한 자

14. 제18조제1항·제21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 또는 제조하거나 의약품을 제조한 자

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제1항(제5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)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.

④ 제1항제7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